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9호로 2020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림3동 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 대림3동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고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문화 습득과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 도모

나.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건

- 약취 및 안전문제로 기피 대상인 유수지에 주민친화적인 체육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가. 대림3동 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				비고
소재지	취득현황(㎡)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단가 (천원/㎡)	금액	
대림동 691-8	284	593.78	이희성	3,356	953,104	324	192,507	건물 시가 표준액

나.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건

구분	재산의 표시		소유자	건물 재산가액 (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취득현황(㎡)		단가	금액	
		건물				
신축	대림동 611 (대림3유수지)	4,318	영등포구	5,316	22,957,339	신축 공사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대림동 691-8번지 284 m^2 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93.78 m^2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 대림동 611번지 대림유수지 내에 지상 3층 건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4,318 m^2 규모의 종합 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임.

○ 위 2건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대림3동 마을도서관 건립을 위해 2019. 6월 마을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2020. 4월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 가능 시설물 현황조사 시행, 5월 대상 물건을 확보한 상태임.
-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설립의 경우, 2017. 8월 대림3유수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완료, 2018. 1월 대림3유수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계획 수립, 2019. 12월 종합체육시설 건립 변경 계획 수립, 2021. 4월 공사 착공, 2022.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구비 47억 9천 5백만원으로 건물매입비 23억 2천 2백만원, 설계비 등 용역비 1억 8백만원, 공사비 21억 4천 4백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2억 2천 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의 사업비는 총 229억 5천 8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0억원, 시비 33억 2천만원, 구비 166억 3천 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공사비 178억 3천 1백만원, 용역비 25억 1천 8백만원, 보상비 등으로 26억 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설치는 인구 대비 지역 내 체육 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구민의 여가 생활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건강 증진 효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 4)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우수시설은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우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우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